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찬성자 22명)

나. 의안번호 : 제 2277 호

다. 발의일자 : 2021. 4. 1.

라. 회부일자 : 2021. 4. 6.

2.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신고의 접수·처리 조문내용과 별첨 신고서 피신고자의 정보 형식이 맞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조문 내용을 준용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요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의 조문을 준용하여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별지 제1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서와 제2호서식 신고 관리카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요건에 대해 관련 상위법 조문내용을 준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표]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고자의 <u>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u></p> <p>2. 피신고자의 <u>성명·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③ (생략)</p>	<p>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 -----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분명히 밝혀야 한다.</u></p> <p>1. ----- <u>성명·주소</u></p> <p>2. ----- <u>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u></p> <p>3. <u>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불법하도급 신고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width: 10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0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e-mail</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td> </tr> </table>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이하생략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불법하도급 신고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0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td> </tr> </table>	-----	-----	생년월일		-----			-----	-----		이하생략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이하생략																																	
-----	-----	생년월일																															

	-----	-----																															
이하생략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td> <td style="width: 100px;"></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td> </tr> </table>	접수번호	20 -	접수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하생략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0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td> </tr> </table>	-----	-----	-----		-----	-----	생년월일		-----	-----	-----		이하생략				
접수번호	20 -	접수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하생략																																	
-----	-----	-----																															
-----	-----	생년월일																															
-----	-----	-----																															
이하생략																																	

- 먼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요건을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피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첨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¹⁾는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의 신고자로 하여금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제1항 역시 이를 준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중 피신고자의 신상정보와 별지 제1호 서식 간에 주소 등에서 일부 불일치하고 같은 용어임에도 ‘실명’과 ‘성명’을 혼용하는 등의 사소한 문제가 보완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여겨짐.
- 다음으로, 현행 조례 별지 제1호서식(불법하도급 신고서)과 제2호서식(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는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²⁾에 따르면 “법률·대통령령

1)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 ④ (생략)

2)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
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불법하도급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와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자의 주민
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
라 사료됨.

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
하는 경우

② ~ ④ (생략)